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3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박대출 · 윤영석 · 김성원
권영진 · 김용태 · 배준영
박수영 · 김형동 · 이인선
김정재 · 김상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여 적용하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정적인 식량 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